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「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(법률 제18484호, 2021.10.19. 일부 개정, 2022.4.20. 시행)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의 입법을 추진하며, 동 입법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의 개정을 병행 추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통일부령 제 호
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 중 “영 제14조제1항”을 “영 제15조제1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 (남북회담대표 등의 임명장 등) ①·② (생 략)	제2조 (남북회담대표 등의 임명장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통일부장관은 <u>영 제14조제1항</u> 에 따라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을 보좌하는 수행원·자문위원 및 지원인력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장을 수여한다.	③----- <u>영 제15조제1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④·⑤ (생 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